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병윤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5일

3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확대됨으로써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(특별휴가) ⑥항 삭제

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※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주요 개정 내용

-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

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 
신설

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  
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 
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  
우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 
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7.4.25>

## 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어린이집, 유치원 및 초·중·고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 및 교사상담을 위하여 2일 이내의(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3일)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6항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의 행사참여를 위한 3일 이내의 특별휴가와 충돌되어 이를 삭제하고, 동 조례의 제18조제3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조항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(특별휴가)제7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올바른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